

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내용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 내용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내용을 합산한 기간(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)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내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
- 라. 처분권자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,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24 조제1호	등록 취소			
나.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4 조제2호	등록 취소			
다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	법 제24 조제3호	등록 취소			
라. 수중레저사업 자 또는 그 종 사자의 고의 또 는 중과실로 사	1) 고의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 우 2) 중과실로 사람	등록 취소			
		영업	등록		

람이 죽거나 다 친 경우	이 죽거나 중상 해를 입은 경우		정지 2개월	취소		
	3) 중과실로 사람 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 우		경고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등록 취소
마.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	법 제24 조제5호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등록 취소	
바.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용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법 제24 조제6호	경고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등록 취소
사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 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 육을 받지 않은 경우			경고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등록 취소
아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 사업자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경고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등록 취소
자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영업시간 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등록 취소	